KOSHA GUIDE

C - 48 - 2022

- (2) 경보장치 : 건설기계에는 전후진시 및 작업시 등에 있어 안전확보를 위해 주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.
- (3) 낙하물 보호구조: 암석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 [불도저, 트랙터, 굴착기, 로더(loader: 흙 따위를 퍼올리는 데 쓰는 기계), 스크레이퍼 (scraper: 흙을 절삭·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), 덤프트럭, 모터그레이더(moter grader: 땅 고르는 기계), 롤러(roller: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), 천공기, 항타기 및 항발기로 한정한다]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춰야 한다.
- (4) 붐 전도방지 장치 : 붐을 올린 상태에서 사용중 하물이 갑자기 탈락하거나 굴곡면 주행중에 흔들려 붐이 전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붐 전도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.
- (5) 붐 기복정지장치: 드래그라인, 기계식 크람쉘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붐 기복방지장 치를 설치하여야 하며, 이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도 붐 각도를 80도 가까이하여 사 용할 경우에는 주의하여 작업한다.
- (6) 붐 권상드럼의 역회전 방지장치 : 붐 권상 드럼의 역회전 방지장치는 붐 권상드럼의 하중으로 인해 와이어로프가 풀리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서, 붐을 하강시키는 동안 작용시키면 라쳇(Ratchet)에 깔쭉기구를 걸어 라쳇이나 깔쭉기구 등이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붐을 하강시키는 동안에는 절대로 작동 시켜서는 안된다.
- (7) 기타 안전장치: 권상 브레이크 페달 잠금장치, 권상드럼 잠금장치, 붐 각도지 시기, 전조등, 경보장치, 헤드가드, 앞 유리창 닦기, 제상(서리), 제무장치의 작동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(8) 당해 기계에 대한 구조 및 사용상의 안전도 및 최대 사용하중을 준수하여야 한다.

4.2 작업시 유의사항

- (1) 주행로의 지형, 지반 등에 의한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
- (2) 이상소음, 누수, 누유 또는 부품, 조작레버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원인을 확인하고 정비하여야 한다.